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70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조문별 검토	6
가. 정의(안 제2조)	6
나. 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9
다. 취약산업의 지정 및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12
라. 취약산업지원기금의 설치(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의자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9. 23.

다. 회 부 일 : 2025. 9. 24.

II.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관세 인상, 환율 변동 등 대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들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산업의 중소기업의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위협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취약산업에 속한 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의 중소기업 중 지원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IV.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환율변동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철강 등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산업생태계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과 환리스크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책금융지원체계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지원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원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외부충격으로 특정 산업군에 급격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하고, 취약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총 12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짐.

제정안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목적: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여 국가경제 안정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 정의: 취약산업, 취약산업기업,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정의
국가의 책무 및 추진체계 (안 제3조 ~제5조)	- 국가의 책무: 취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취약산업기업의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 조사·연구 등: 기재부장관은 대외경제의 급격한 변화 대응과 취약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 사업을 할 수 있음 - 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의 수립: 기재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시행
취약산업의 지정 및 지원 (안 제6조 ~제12조)	- 취약산업의 지정: 기재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지정해제 -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재부장관이 취약산업기업을 지정하여 금융지원,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이행 등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은 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 - 기금의 설치: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 - 보고: 기재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약산업기업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
부칙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유효기간: 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다만 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취약산업 금융지원에 대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하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와 역할의 중복·충돌이 없도록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관 간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는 이미 정책금융 등을 통해 대외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지원 중이므로 취약 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었으므로(2026.1.2. 시행), 제정안에 따른 취약산업 지원 기능은 재정경제부에서 수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그 외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의 조문별 검토에서 논의함.

2. 조문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 취약산업: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산업 ○ 취약산업기업: 취약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 ○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신용보증, 무역보험 지원, 수출입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 ○ 정책금융기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그 밖에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기업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안 제2조는 취약산업, 취약산업기업, 금융지원 및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다만 안 제2조 제1호는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효율성 및 경쟁력 저하’, ‘심각한 위험’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대외경제 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산업이 취약산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취약 산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취약산업의 지정 요건을 대통령령 등으로 보다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산업”이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해당 산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에 처한 산업을 말한다. 2. “취약산업기업”이란 취약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금융지원”이란 정책금융기관을 통하여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융자, 신용보증, 무역보험 지원, 수출입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책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마.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아. 그 밖에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거나 기업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의 수립(안 제5조)

제 정 안
○ 수립주체 및 수립절차 - 기재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 - 기재부장관은 확정된 금융지원계획을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기재부장관은 금융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책금융기관의 장, 취약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 주요 내용 - 취약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 추이 - 취약산업기업의 현황과 향후 추세 -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회 보고의무 - 기재부장관은 금융지원계획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

안 제5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산업 및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관리·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제정안에 따른 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금융 지원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처 간 업무의 중복·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2년 12월 출범한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및 산업담당 정부 부처(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등) 간 상설협의체로,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공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해당 협의회는 2024년 12월 개최한 제9차 회의에서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29.7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2025년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계획]

분야	주요 산업(부문)	공급계획
첨단전략산업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원전·바이오(이동)·인공지능(신설)	37.2조원
미래유망산업 지원	나노·수소·컨텐츠·ICT·해양수산·교통·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방위·농식품·통신·딥사이언스·태양전지(신설)·물산업(신설)	21.5조원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구조고도화	산업위기대응·자동차부품·조선·철강·정유·섬유·항만장비·광학·플라스틱·시멘트·석유화학(신설)·태양광(신설)	31.0조원
유니콘 벤처·중소· 중견기업 육성	성장잠재력 높은 벤처·중소기업 등의 글로벌기업 도약·중견기업지원(신설)	16.7조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기계·전기산업 및 기업 경영애로 해소	29.7조원

자료 : “25년 정책금융 공급 247.5조원 136조원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공급”, 금융위원회, 2024.12.24.

기획재정부는 현행 정부조직법상 금융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은 금융위원회가 주관부처이며, 취약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세제 등 종합지원이 필요하므로 금융지원계획만으로는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5조(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한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이하 “금융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 추이 3. 취약산업기업의 현황과 향후 추세 4.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금융지원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책금융기관의 장, 취약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지원계획의 수립 후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금융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취약산업의 지정 및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안 제6조 및 제7조)

제 정 안
○ 취약산업의 지정 - 기재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취약산업을 지정·지정해제 ○ 취약산업기업의 지정 및 지원 - 기재부장관은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지원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2. 기업의 경영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이행 3.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기술·판로·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 4. 그 밖에 취약산업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의 지원을 받은 취약산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약산업기업 지정 취소 가능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취약산업기업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3.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어려움 등이 해소되어 기업 경영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 제6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여 금융지원, 경영환경 진단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취약산업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취약산업기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타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지원사항과 중복·충돌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안 제7조 제1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정책금융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은 금융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환경 진단, 인력·기술·판로·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 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시]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2025년 예산액* (백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해외마케팅 능력 취약, 무역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92,058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원	지역산업 및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컨 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역량 강화	61,386
원스톱기업애로 종합지원	지방중기청·사무소에 전문가(비즈니스지원단)를 배치 하여 전화, 방문, 인터넷 등과 연계하여 기업의 각종 애로를 상담 등	10,997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추경 기준

둘째, 제정안에 따른 고용인원 유지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7조 제3항은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이 고용인원 규모 유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동조 제4항 제2호에서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약산업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산업기업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사실상 고용인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런데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하여 고용인원 유지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으며, 고용인원 자체가 적은 상황에서는 소규모 해고만으로도 고용인원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제정안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약 804.3만 개, 중소기업 종사자는 약 1,895.6만 명으로 기업당 종사자 수는 2.36명 수준이며, 중소기업 중 76.5%는 1인 기업이고 20.6%는 종사자 규모가 2~9인으로 중소기업 절대다수의 고용인원이 10인 미만인 상황임.

[종사자규모별 중소기업 현황]

(단위 : 개, %)

구 분	2021년		2022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1인	5,795,372	75.1	6,149,597	76.5
2~9인	1,688,264	21.9	1,660,149	20.6
10~99인	220,454	2.9	222,990	2.8
100~499인	9,298	0.1	9,432	0.1
500인 이상	507	0.0	558	0.0
전체	7,713,895	100.0	8,042,726	100.0

자료 : 「2022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2024.8.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6조(취약산업의 지정)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을 취약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으로 지정된 산업이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취약산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약산업의 지정·해제의 기준 및 절차, 취약산업의 지정 요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2. 기업의 경영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이행 3. 급격한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기술·판로·해외진출 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 4. 그 밖에 취약산업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받고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취약산업기업 지정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3.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 등이 해소되어 기업 경영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취약산업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지원방법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취약산업지원기금의 설치(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 정 안
○ 기금의 목적 -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기금의 재원 - 정부 출연금, 정책금융기관 출연금, 그 외 출연금,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예수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기금의 용도 - 취약산업기업 경영에 필요한 융자 - 취약산업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 - 취약산업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경감 또는 보전 - 취약산업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 취약산업기업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 기금의 운용·관리 - 기재부장관이 운용·관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책금융기관에 위탁 가능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취약산업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제5조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

1) 제5조(기금의 설치) ①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

이에 따라 취약산업지원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별표 2를 개정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171호,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함께 계류되어 있음.

다만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며 칸막이식 운용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14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기금 신설 심사 요건으로 ①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③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 일반 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을 제시하고 있음.²⁾

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2)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먼저, 취약산업지원기금은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데, 해당 재원이 목적사업인 취약산업 지원과 직접 관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은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회계임.³⁾

다음으로, 현재 제정안에 따른 취약산업지원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있는바, 이와 별도로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관리하는 기금으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융자·자금지원, 기술개발·사업전환 등 지원, 국내외 판로 지원, 경영 정상화 지원, 주식 및 사채의 인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⁴⁾

3)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해당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채무 조정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취약산업지원기금과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는 취약산업지원기금의 재원이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립요건인 기금 재원과 목적사업 간 긴밀성과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지도·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 18의2. 중소기업·벤처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관리 및 회수
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2.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 22의3. 삭제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5. 제6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6.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제18호의2 및 제19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재원조달의 중·장기적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제정안 원문

제 정 안
제8조(기금의 설치)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제1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용자, 보증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산업기업 경영에 필요한 용자
2. 취약산업기업의 채무에 대한 보증
3. 취약산업기업의 용자금에 대한 이자 경감 또는 보전
4. 취약산업기업의 무역보험 지원
5. 취약산업기업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6.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채무 조정 지원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60